

#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

강원교육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경기학생인권실현을위한네트워크/ 경북교육연대/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회/ 광주교사실천연대 '활'/ 광주노동자교육센터/ 광주비정규직센터/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광주인권회의/ 광주청소년인권교육연구회/ 광주청소년회복센터/ 광주 YMCA/ 교육공공성실현을위한울산교육연대/ 교육공동체 나다/ 국제엠네스티대학생네트워크/ 군인권센터/ 노동자연대 다함께/ 녹색당+/ 대안교육연대/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대한성공회정의평화사제단/ 동성애자 인권연대/ 무지개행동 이반스쿨팀/ 문화연대/ 민주노동총서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불교인권위원회/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 서초강남교육혁신연대/ 시민모임 즐거운교육 상상/ 십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 대리인/ 양평교육희망네트워크/ 어린이책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법률공동체 두런두런/ 인권운동사랑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서울지역본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부설 한국아동청소년인권센터/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진보교육연구소/ 진보신당서울시당/ 진보신당청소년위원회(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청소년다함께/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 통합진보당서울시당/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학벌없는사회/ 학생인권을위한인천시민연대/ 학생인권조례제정경남본부/ 한국계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성폭력상담소/ 흥사단교육운동본부/ 희망의우리학교/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

수신: 민주·진보교육감 후보 김윤자·송순재·이부영·이수호·정용상

날짜: 2012년 10월 30일(화)

제목: 민주·진보교육감 후보들에게 드리는 인권정책 질의서

문의: 변춘희 공동집행위원장

---

서울시 민주·진보 교육감 후보에게 묻습니다.

교육은 우리 사회의 현재모습과 미래모습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지금 욕망하는 것을 교육에 반영하여 가르치기 때문이고, 학생들은 지금 배운 것을 평생 기억하기 때문에 미래 사회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미래의 인재로 키우는 것을 교육의 목표로 두느냐 현재의 민주시민으로서 사는 것을 교육의 목표로 두느냐에 따라 교육은 달라집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이 가정과 학교와 마을과 사회에서 현재를 사는 시민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후보님께서 어린이·청소년 인권에 대한 어떤 정책을 가지고 계신지를 질문드리고자 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서울시는 지난해 서울시민의 '주민발의'로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서울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였고, 올해는 학교 밖까지 아우르는 '어린이·청소년인권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인종차별, 여성차별, 장애차별, 나이차별 등 여러 가지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는 학교에 인권친화적 문화를 만드는 일이므로, 교육청의 노력에 따라 빠르게 자리잡을 수 있습니다.

1-1. 후보께서는 교육감이 되신다면 인권친화적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실 계획입니까?

1-2.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보장된 학생의 권리 중에서 학교현장에 우선 실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학생의 권리 3가지를 꼽아 주세요.

1-3. 학생인권보장을 위해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명시된 교육청의 책무 중에서 우선 시행해야 할 책무 3가지를 꼽아 주세요.

2. 성폭력과 학교폭력이 전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많은 진단과 정책적 대안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근본적으로 반인권적인 입시제도와 경쟁체제, 폭력적인 사회시스템에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그러나 모든 폭력이 차별을 매개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반(反)차별 감수성을 포함한 인권교육의 전면적 시행과 교육내용의 획기적 변화가 필수적입니다. 서울학생인권조례에도 차이가 존중되고 차별에 맞서는 교육을 펼쳐야 할 교육청의 책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 등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

①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빈곤 학생, 장애 학생, 한부모가정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외국인 학생, 운동선수, 성소수자, 근로 학생 등 소수자 학생(이하 "소수자 학생"이라 한다)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사회구조나 문화에 따라 누구나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소수자 학생이 될 수 있음에 유념하면서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을 해소하는데 필요한 인권교육프로그램과 소수자 학생을 위한 진로 및 취업 프로그램, 상담프로그램을 별도로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소수자 학생에 대하여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의 보장을 위하여 전문상담 등의 적절한 지원 및 조력을 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장애 학생에 대하여 교내외 교육활동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참여를 보장하여야 하며,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라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⑤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빈곤 학생이 가정형편으로 말미암아 수학여행 등 교육 활동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⑥ 다문화가정 학생, 이주민가정 학생을 비롯한 외국인 학생의 인권은 당사자 또는 보호자의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다문화가정 학생, 이주민가정 학생을 비롯한 외국인 학생에 대하여 교육활동에서 언어? 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한 차별 없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전? 입학 기회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⑦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다문화가정 학생, 이주민가정 학생을 비롯한 외국인 학생 등에 대하여 그의 문화적 정체성을 학습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그에 적합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⑧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관한 정보나 상담 내용 등을 본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보호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학생의 안전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도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2-1. 서울학생인권조례에 적시되어 있는 인권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고 확대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2-2. 후보님께서는 학교급별, 주제별, 대상별(학생·교사·학부모) 반차별 교육 실시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2-3.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입각한 성교육,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기반한 차별금지의 내용을 포함한 인권교육을 적극 시행할 계획이 있습니까?

3. 학업과 일을 병행하고 있는 청소년이 많습니다. 청소년노동자들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혹은 노동권을 잘 모르는 까닭에 노동현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흔합니다. 게다가 학교에서도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사실을 존중받지 못합니다.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전문계고 산업체 현장실습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다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하는 청소년과 현장실습생들을 위해 교육청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4. 투표연령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정치 참여 요구도 활발합니다. 특히 교육진영에서는 학생, 교사, 학부모를 '교육 3주체'라고 부르면서도 학생의 의사가 교육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영역에 우선하여 교육정책에 학생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방안이 시급합니다.

4-1. 교육감 선거만이라도 청소년들이 참여하도록 하는 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

십니까? 만약 참여한다면 몇 살부터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4-2. 이번 교육감 추대위의 선거에서는 법 개정 없이도 청소년이 선거인단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17세 선거인단 참여 여부를 두고 많은 논란이 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 추대위 선거에 청소년이 참여하는 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만약 참여한다면 몇 살부터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4-3. 교육자치에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제안해 주십시오.

5. 청소년 성소수자들 또한 다른 청소년들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라는 공간에서 보냅니다. 그 공간에서 사회가 규정해 놓은 성별규범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혹은 성적지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수많은 억압과 좌절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청소년 성소수자들뿐만 아니라 다양성과 평등의 가치를 배워야 할 모든 학생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5-1. 청소년 성(性)소수자(sexual minority)를 바라보는 귀 후보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5-2. 많은 연구결과에서 보여주듯 학교 공간에서 벌어지고 있는 동성애혐오적 괴롭힘은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삶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 성소수자 44% 가량이 성소수자란 이유로 학교 내에 모욕이나 괴롭힘을 당해본 적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교사로부터 성소수자 비하 발언이나 편견을 접한 경우도 18% 가량 되지만 학생으로부터 접하는 경우도 29%나 된다고 합니다. 또한 청소년 성소수자 중 자살에 대해 생각해 본 경우는 76.6%, 실제로 자살 시도를 해 본 경우가 58.5%에 이를 만큼 자살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학교환경 내 동성애혐오적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귀 후보의 정책이 있습니까? 있다면 구체적으로 대상, 방식, 방향을 적어주십시오.

5-3. 귀 후보의 정책 중 성(性)에 기반한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은 무엇이 있습니까?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답변 마감 시한: 11월 2일(금)

☞ 답변 보내실 곳: [na\\_narcissus@hanmail.net](mailto:na_narcissus@hanmail.net) 또는 F.02)365-5364